논문집 올해의 논문상 포상규칙

제 1 조 (목적) 우수한 논문의 투고를 장려하여 수자원분야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이 상의 명칭은 ‘논문집 올해의 논문상’ 이라 칭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학회 정회원에게 적용한다.

제 4 조 (심사위원회) ①심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집 편집위원장, 총괄간사, 편집위원 1인, JHER 위원장, 학술부회장 2인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논문집 편집위원장으로 한다.
②위원회는 수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③위원회의 위원이 추천된 후보논문의 저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다. 해당 위원이 위원장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차순위 위원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.

제 5 조 (수상후보선정)
①수상 대상 논문은 전년도 우리학회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으로 한다.
②전년도 모든 편집간사는 감수 또는 심사를 담당한 논문 중 1편씩 후보 논문을 추천한다.
③추천된 후보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심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.

제 6 조 (수상논문 결정)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서류심사를 진행한다.
②서류심사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유효하다.
③서류심사에서 논문의 독창성, 창의성, 국제적 발전가능성, 학회기여도에 따라 위원 개별 평가하고, 참여한 모든 심사위원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논문을 단일 후보로 결정한다.
④서류심사에서 통과한 논문의 대표저자(1저자 또는 교신저자)에게 구두발표를 진행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최종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.
⑤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 조 (포상)
① 시상은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수여한다.
② 시상은 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에게 수여한다.
③ 수상 논문의 저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을 줄 수 있다.

제 8 조 (특전)
①수상논문은 학회지 특별기사 또는 논문집 편집위원장 노트 등으로 내용을 소개한다.
②수상논문의 저자에게는 우리학회와 교류하는 국외학회의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의 일부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